

다케시마에 상륙한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개 질문장'과 관련해 예상되는
한국측 답변례와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에 의거한 답변례

2019년 2월 22일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작년 11월 21일에 개최된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도쿄집회'에서 저희는 다케시마에 상륙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이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근거를 묻는 '공개 질문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에게 즉시 질문장을 우편으로 보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어, 영어, 한국어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회의원 분들로부터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봉투가 뜯긴 상태로 질문장이 반송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 중학생이 일본 중학생에게 보낸 다케시마 영유 관련 의견을 묻는 엽서의 경우, 일본측은 한국측의 인식 착오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법적 해석을 꼼꼼하게 설명한 답장 편지를 한국 중학생에게 보냈습니다.

한일간에 인식이 다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반드시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 정의에 근거한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의견교환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일본측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한국측 답변례'와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에 의거한 답변례'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작성한 것이며, 여기에 제시한 한국측 답변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예상에 따른 예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와 다른 답변이나 다른 논점, 생각 등이 있으면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의원간의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질문 1 관련

(질문 본문)

한국측은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왔다”라고 한데 대해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 및 사료는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상되는 한국측 회답의 예)

동북아시아역사재단 편 「독도교육 참고자료 『우리 영토 독도와 만나다』」(2011 간행)참조 이하 같음)

독도는 지리적으로는 울릉도가까이 있어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히 독도를 부속 섬으로 인식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사실 및 국제법에 따른 회답의 예)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는 근거로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 전후에 편찬된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산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지도에서는 우산도를 현재의

죽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국의 영토에서 가까운지 아닌지, 섬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그것들은 영토 확정에서 국제법상 고려되지 않아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것은 영유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2. 질문 2 관련

(질문 본문)

한국측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한국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데 대해 그것을 증명하는 문헌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상되는 한국측 회답의 예)

독도가 한국령임을 나타내는 문헌으로는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만기요람’(1808년)이 있습니다.

특히 ‘만기요람’에는 “여지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 (독도) 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 (松島)”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측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가, 일본의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사실 및 국제법에 따른 회답의 예)

‘만기요람’은 1770 년에 작성된 ‘동국문헌비고’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이 ‘동국여지승람’ 이 인용한 ‘여지지’의 원전에는 “우산을릉본일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이른바 마쓰시마로 간주된 것이 1770 년의 ‘동국문헌비고’에서부터인 것이 됩니다.

이 1770 년에 편찬된 문헌의 근거로 그 이전에 편찬된 ‘삼국사기’(1145 년), ‘세종실록 지리지’(1454 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년)에 기재된 우산국과 우산도를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질문 3 관련

(질문본문)

한국측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다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태정관지령’에서 ‘다케시마 외 일섬(竹島外一島)’으로 기술된 섬을 이후 일본에서는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그 역사적 경위 및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상되는 한국측 회답의 예)

1876년 10월 시마네현이 관내의 지적조사와 지도편찬 작업을 하는 중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해야하는가 내무성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무성은 이 문제가 일본의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당시,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결정을 문의하였습니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기죽도략도(磯竹島略圖)’입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당시 일본의 독도 명칭인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사실 및 국제법에 따른 회답의 예)

‘기죽도략도(磯竹島略圖)’는 시마네현이 작성한 것으로 태정관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죽도략도’는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섬(竹島外一島)’이라고 한 마쓰시마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인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태정관지령을 내린 당시의 해도와 지도에는 다케시마(아르고노트 섬)과 마쓰시마(다쥬레트 섬)가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아르고노트 섬)은 이후

실재하지 않는 섬으로 판명되었고 마쓰시마(다주레트 섬)이 현재의 울릉도임이 판명되었습니다.

1881년 외무성의 명으로 '다케시마 고증'을 정리한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현재의 마쓰시마는 1699년 칭하는 다케시마이며, 옛부터 우리 판도 외 땅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후 일본정부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섬'이라고 한 마쓰시마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닌 것입니다.

4. 질문 4 관련

(질문본문)

한국측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로 돌아왔고, 한국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한데 대해 그 국제법 근거 및 문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상되는 한국측 회답의 예)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영토에 독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 . . 이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해 퇴급했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기간 내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한 지역을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 호(1946.1.29)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해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영토를 포기한다고 명기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에
반환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역사적사실 및 국제법에 따른 회답의 예)

카이로 선언에서는“폭력과 탐욕으로 일본국이 탈취”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측이 예로 든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만기요람(1808년)에 적힌
우산도가, 어느 것도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합니다.

또한 행정상의 권력행사를 정지할 것을 기재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의 ‘일부 외곽지역을 정치상 및 행정상
일본에서 분리할 것에 관한 각서’의 제 3항에는에서는,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a) 울릉도, 다케시마, 제주도. .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 지령각서 제 6 항에는 “이 지령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 8 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이 각서가 영토의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 1951년 7월 19일, 한국의 양유찬 주미대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에 대한 요망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요망서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 및 파랑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8월 10일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하며,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했습니다.